

의안번호	
의 퇴 인	장혜영 의원
회 답 일	2023. 9. 1.
추계번호	23A337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4조의2 (특수활동비 등의 관리)	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둔. 동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4조의2 (특수활동비 등의 관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(이하 ‘특수활동비 등’)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수당 등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이 규정한 각 중앙관서별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 수립(제1항) 및 집행결과보고서 작성(제3항)의 경우 현재 부처의 업무추진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수행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
 - 2022년 결산기준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기관(총16개) 중 자료조사에 응한 5개 기관 중 4개 기관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자체지침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소요예산은 없는 것으로 응답함

[표 1] 특수활동비 편성 및 관리현황

(단위: 백만원)

	행정안전부	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국방부	국세청	관세청
특수활동비(2022 결산)	681	638	102,534	2,812	980
자체지침/집행계획 수립 여부	×	○	○	○	○
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여부 (연간 운영횟수)	×	○ (1회)	○ (무응답)	○ (1회)	○ (12회)
외부전문가 포함 여부	×	×	×	×	×
집행결과보고서 작성 여부	×	○	○	○	○
집행결과보고서 공개 여부	×	×	×	×	×

주: 특수활동비 관리현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조사 요구에 회답한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됨
(2022년 결산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중앙관서는 총 16개 기관임)
자료: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중앙관서별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각 중앙관서별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 관련 소요비용의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

- 각 중앙관서별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, 연간 운영횟수, 지급되는 수당액 등에 따라 소요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예측이 곤란함
 - 참고로 자료조사에 응한 5개 기관 중 4개 기관에서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관련 소요예산은 없는 것으로 응답함

□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주계세제총괄과	태정립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립	02-6788-4652	jitae@assembly.go.kr